



공급업체정보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4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년(와) 제853호
판결 일자	2008. 11. 26.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주식회사 댄스 뮤직 레코드		
피고	1. A, 2. B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6항,		
영업 비밀	공급업체정보		
키워드 (Keyword)	비밀유지 합의, 경업금지, 영업비밀, 손해배상		

02 사건 개요

원고는 레코드 기획, 제작, 판매 및 수입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주된 사업으로 레코드, CD등의 인터넷통신판매업무 및 모바일 사이트에서의 통신판매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 A는 1999년1월, 원고에 취직하여 그 본사에서 주로 레코드, CD등의 인터넷통신 판매업무, 모바일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무 및 레코드, CD등의 구매업무를 해왔으며 피고B는 피고A의 아버지이다.

본건은 레코드, CD등의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원고의 원래 직원이던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를 퇴사한 후, 경업회사에 취직하여, 원고 회사 재직 중에 얻은 공급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본건 공급업체 정보는 본건 기밀사항 등에 해당함과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본 건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므로 비밀성을 갖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비밀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이나 기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경업금지합의를 위반했다		본건 공급업체 정보를 이용한 바 없다
피고의 행위는 비밀유지합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이용했다고 해도 비밀유지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위반으로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04 판결 요지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직원이기만 하면, 그 사용자 ID 및 암호를 사용해 서버에 접속된 PC로 본건 공급업체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열람할 수 있고, 그 파일 자체에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수단이 아무것도 강구되지 않은 데다 직원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도 그 대상이 추상적이며, 본건 공급업체 정보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원고가 직원에게 본건 공급업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주의환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강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누락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비밀유지합의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본건 기밀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정의 없이, 그 예시조차 거론하지 않은 것이 인정 되므로 본건 공급업체 정보가 본건 기밀사항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A가 원고회사에서 재직 중에 해당 업무에 중추에 관계하는 중요한 지위에서 일하지 않았고, 종사한 업무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책임지는 입장도 아니었으며, 본건 경업금지합의에 기초하여 어떠한 대가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은 경업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05 Key Point

비밀관리성의 인정에 있어서는 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지 등이 그 판단 요소가 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의 성질, 보유 형태, 정보를 보유한 기업 등의 규모 외에도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직원인지 외부인인지 등도 고려된다.

퇴직 후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 지위의 높이 및 직무 내용, 사용자의 정당한 비밀과 지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대상 직종, 기간 및 지역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광범위하지 않을 것, 보상의 존부 및 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